

제2020-116호
2020년 6월 22일(월)



시정지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시

- | | | | |
|----------|------------|------------------|---|
| ○ 여수시 고시 | 제2020-21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 3 |
| ○ 여수시 고시 | 제2020-22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 4 |

공고

- | | | | |
|----------|-------------|--------------------------------------|----|
| ○ 여수시 공고 | 제2020-1547호 |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5 |
| ○ 여수시 공고 | 제2020-1554호 | 여수시 어촌뉴딜 300사업 담당 사무장 채용 공고 | 10 |
| ○ 여수시 공고 | 제2020-1559호 | 도로지정공고(여수시 주삼동 174-5) | 16 |
| ○ 여수시 공고 | 제2020-1560호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남만남도어촌체험휴양마을) | 17 |

기타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0 - 218호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 · 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 · 사용 장소	점용 · 사 용 면적(㎡)	점용 · 사용 목적	점용 · 사용 기간	피 승 인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20-63 (2020.6.22.)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441-16번지 일원	2,185	돌산읍 작금항 방파제 연장공사	2020. 6. 22. ~ 2050. 6. 21.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20. 6. 22.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0 - 22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 용 면적(㎡)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기간	피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0-64 (2020.6.22.)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0-21번지 지선	1,161.6	굴구지향 퇴적예방 사업	2020. 6. 22. ~ 2050. 6. 21.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20. 6. 22.

여 수 시 장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2.

여 수 시 장

1. 개정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30% 이상 경감조치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발표

2. 주요내용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해 30% 한시적 경감 조항 신설 (안 제6조의 2)

3. 관련 법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06. 22. ~ 06. 26.(5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6월 26일까지 여수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교통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659-5837),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수시청 교통행정과(☎061-659-41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특례)

-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모든 시설물(부과기간이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인 시설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유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6조의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금 한시적 경감특례)</u></p> <p><u>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0년 교통유발부 담금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대하 여 100분의 30을 경감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교통량감축 활동 등 기존 부담금 경감 항목을 유지한다.</u></p>

여수시 어촌뉴딜 300사업 담당 사무장 채용 공고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전단계(공모·사업개발계획 수립, 사업시행, 운영)에 걸쳐 지역민을 대표한 의사결정과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공적 정착 유도를 위해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 및 지역단위 거버넌스 협의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무장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22.

여 수 시 장

1. 채용개요

- 가. 채용기간 : '20. 7. 1. ~ '21. 6. 30.(1년)
- 나. 채용분야 : 사무장(어촌뉴딜사업 협의체)
- 다. 채용인원 : 3명(남면 안도, 화정 둔병, 삼산 의성)

2. 근무조건 및 담당업무

가. 근무(채용)조건

구 분	채용기간	모집인원	급여(활동비)	근무조건
남면 안도항 어촌뉴딜300사업	1년간 협약체결	1명	월/180만원	주 5일 (1일/8시간)
화정면 둔병항 어촌뉴딜300사업	1년간 협약체결	1명	월/180만원	“
삼산면 의성항 어촌뉴딜300사업	1년간 협약체결	1명	월/180만원	“

나. 담당업무

-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협의체 관련 업무전담 수행
- 주민공동 이용시설 등 추진관련 주민자부담, 운영관리 업무

- 지역 고유 브랜드개발, 홍보, 마케팅,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등 주민들이 추진해야할 지역역량강화(S/W) 관련 업무
-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협의체, 자문단, 지원단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원
- 협의체 등 분야별 조직화 및 운영지원
- 기타 지역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장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협의체와 사무장과 협의하여 정함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촌지역 개발관련 분야에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자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의지가 높은 다음 요건에 적합한 자.
 - 행정능력 등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자
 - 담당 업무의 원활한 수행 가능한 자로서 주민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가능한 자
 - 상근직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자
 * 다만, 지원 대상마을 및 시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농·어업은 겸직 가능
 -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어촌지역개발에 의지가 강한 자

나. 우대사항

-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선정 된 지역주민
- 담당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PC활용 등)
- 업무관련 교육이수자(농·어촌 지역개발, 정보화, 회계관련 교육 등)

다. 기타사항

- (제외자)마을 대표의 직계비속, 홈페이지 등 컴퓨터 활용 할 수 없는 자

4. 신청접수 및 선정방법

가. 공고기간 : 2020. 6.22.(월) ~ 6. 26.(금)

나. 접수기간 : 2020. 6.26.(금) 1일간, 09:00~18:00(업무시간내)

다. 접 수 처 : 여수시청 문수청사 섬자원개발과 어항시설팀(☎061-659-3992)
 [여수시 여문2로 124(문수청사 3층, 섬자원개발과)]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작성하고 본인이 제출서류 지참하여
 섬자원개발과 어항시설팀 방문접수(우편 접수 불가)

마. 선정방법

- 1) 제1차 : 적격•서류심사
 - 2) 제2차('20. 6.30.) : 면접심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대상자는 개별 유•무선 통지)
 - 3)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 시 동점자 발생할 경우
 - 사업참여경력자, 전공해당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 순 선발
 -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30.(화)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유선 또는 SMS)
- ※ 3개월간 시보 기간이 경과 후 시장(위탁시행자), 협의체와 사무장간에 협약을 체결(시보기간 중 활동비 지급)

5.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포함) 1부(붙임 3)
- 나. 기본서류 : ①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②주민등록 등본 1부, ③자격증 사본 1부,
④교육수료증 사본 1부
- ※ ①~②는 모든 신청자 제출, ③~④는 해당자 만 제출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 경력•자격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서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
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
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
합니다.
- 다. 응시자격은 상시 총족요건으로 연도 중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근
로계약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섬자원개발과 어항시설팀(☎061-659-399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여수시 어촌뉴딜300사업 사무장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나이(만)	② 학력(전공)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 근무희망지역	(남면 안도항, 화정면 둔병항, 삼산면 의성항) 어촌뉴딜300 사업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 주요경력		
⑥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2020년도 여수시 ○○항 어촌뉴딜300사업 사무장 공모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추가자료 : 주민등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작성요령

-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 ② 학력(전공) : 최종학력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 ③ 공모 희망지역 : 공고 희망지역 기재
-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주요경력 :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⑥ 기타 특이사항 : 근무희망 지역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어촌뉴딜300사업 담당 사무장 채용 및 관리)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
이용 목적	어촌뉴딜300사업 담당 사무장 채용 및 관리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2년)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채용 진행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 제공으로 당해 채용시험 지원 불가

2020. . .

성 명

(서명)

여수시장 귀하

[여수시 공고 제2020-1559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주삼동 174-5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로 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 ²)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13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주삼동	174-5	24	4	13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22.

여 수 시 장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20년 06월 22일

여 수 시 장

1. 지정년월일 : 2020년 06월 22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낭만낭도어촌체험휴양마을
- 위 치 : 여수시 화정면 여산길 64번지 일원
- 규 모 : 15,221m²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황 광 수
- 주 소 : 여수시 화정면 여산길 33

4. 사업개요

- 어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 공룡화석발굴 체험, 개매기 체험, 낭만어부 체험, 압화공예 체험, 방풍개떡만들기 체험 등
- 야영장
- 민박
- 어촌밥상, 특산물 판매 등

5. 불 입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조건

사업자는 「낭만낭도어촌체험 · 휴양마을」 운영시 아래 지정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 가. 사업자는 「낭만낭도어촌체험 · 휴양마을」 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어촌체험 · 휴양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여수시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본 지정서는 「도농교류 촉진법」에 의한 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을 위한 것일 뿐, 그 외의 사항은 별도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 ·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산관리

- 가.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농교류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 나. 사업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수,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마.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자체 없이 재산(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도·농 교류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나.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려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 상기 사유 이외에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 가.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만약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시장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상기의 사건·사고가 시장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사업자는 「낭만낭도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①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③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④ 가스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호'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종료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낭만낭도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시설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 청소료 등> 등)은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마.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바.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들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사.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별표4]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시설이 있을 시는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 자. 사업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차. 시장은 「낭만낭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은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되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준수사항(제4조 관련)

구분	시설의 종류	준수사항
1. 소방 시설 설치 기준	가. 폐교	<p>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p> <p>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를 갖출 것</p> <p>3) 연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출 것</p> <p>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p> <p>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5)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갖출 것</p> <p>7)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용 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p>
	나. 그 밖의 마을 공동 시설	<p>1) 수동식 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2대 이상 갖출 것</p> <p>2)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경보기를 갖출 것</p> <p>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층 또는 창이 없는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를 갖출 것</p> <p>4)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갖출 것.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p> <p>5)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갖출 것</p> <p>6)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고 휴대비상조명을 반드시 갖출 것</p> <p>7) 화재 또는 열 관련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출 것</p>
2. 안전 시설 기준	마을 공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체험이 행하여질 경우 체험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 및 안전경고물을 설치하고, 사전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

별첨2**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1****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항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마.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지정취소
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45일	지정취소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지정취소		

별첨3**도농교류 촉진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태료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2	5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40만원
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200만원
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30만원
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40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8조제4항	20만원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1호	30만원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1호의3	100만원
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8조 제3항제2호	50만원

비고 :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